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8
----------	-----

제출년월일 : 1998. 6. 10.

제출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비합리적인 용어 및 서식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비합리적인 용어개선 보완(안 제2조제1. 2. 5호, 제5조제1항)
-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을 정비(안 제6조 및 별표3)

## 3. 근거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36조

##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불필요

## 5. 본 문

###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환경개선'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으로 하며,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응자하는 자금'을 '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응자하는 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지원법 제10조3항 및 동법시행령21조4항'을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민 또는 기업,'을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응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대출 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3」의 기준으로 응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대여약정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 (용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①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u>주민 또는 기업</u> , 다만, 용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용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용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용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①지원법에 의한 - - - - - - - - - - - - - - - -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u>주민 또는 기업</u> 으로 한다. 다만, 용자대상자 확정후 - - - - - - - - - - - - - -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6조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제6조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u>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3」의 기준으로 용자한다.</u>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대출한도액</th><th>대출 이자율</th><th>상환조건</th></tr> </thead> <tbody> <tr> <td>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td><td>1인당 500 만원 이내</td><td>연 3%</td><td>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td></tr> <tr> <td>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td><td>기업당 2,000만원 이내</td><td>연 3%</td><td>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td></tr> </tbody> </table>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 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별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대여약정서'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 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별지 삭제												

[ 별표 3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만원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